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1
----------	-------

제안년월일 : 2026. 4. 2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고착화 및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법률 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 (안 제6조제1항)
- 나. 기존 입법·법률고문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 규정 (안 제6조제2항)
- 다. 종전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봄 (안 부칙 제2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가. 개정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5.1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구의회 의장**”를 “**의장**”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위촉**”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입법·법률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

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p>있다.</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임기)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 기가 만료되어도 구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 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p>	<p>제6조(임기) ① ----- ----- ----- 한 차례 에 한하여 연임----- ----- -----</p>
<p>〈신설〉</p>	<p>② 입법·법률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 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7조(자문 요청 등) ① 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의회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7조(자문 요청 등) ① ----- ----- -----의장----- -----</p>
<p>② 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 하여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② 의장-----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고문료 등) ① (생략)</p>	<p>제9조(고문료 등) ① (현행과 같 음)</p>
<p>② 고문료 등은 <u>서울특별시 마</u></p>	<p>② ----- 「서울특별시 마</p>

<p><u>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u>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u>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u>----- -----.</p>
<p>③ <u>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u>을 준용하여 지급한다.</p>	<p>③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u>」-----.</p>
<p>제10조(소송수행 위임) <u>구의회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u></p>	<p>제10조(소송수행 위임) <u>의장은</u>----- ----- ----- ----- ----- ----- -----</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종전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u></p>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최은영
연 락 처	02-3153-6082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2.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평가대상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① 의회 의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제4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 한다.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①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각 자치구 의회는 입법이나 법률 사안 및 의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

□ 문제점

- 대다수 자치구 의회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
 - 연임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연임 또는 재위촉할 수 있으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가 우려
 - 장기 연임 시 특정인에게 의회 관련 일감 몰아주기,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부패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참고>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中 위원 임기와 신분규정 일부

- ◆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중략)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개선방안

- ① 부산 수영구의의회 등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여부 및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 대구 남구의의회, 인천 남동구의의회 등 연임규정이 있는 자치구 의회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